

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

1.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성명

2. 대상사건	통보기관	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
	통보일자	
	사건번호	

위 사건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2항 및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50조에 따라
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
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처분권자

